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1099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9. 9.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9. 9. 25. 접수 제876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38018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8. 9.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620,660원과 그중 12,870,184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5. 3.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F, 피고, G, C, H, I, J(상속 지분 각 1/7,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다. 공동상속인들은 2019. 9. 2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9. 9. 25. 접수 제876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천안시 서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 있었던 2015. 3.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3.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공동상속인들이 2019. 9. 23.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9. 25.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신청서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2015. 3. 2.이 아니라 실제로는 2019. 9. 23.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는 2019. 9. 23.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약의는 추정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2019. 9.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 중 C의 상속분인 1/7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필

별지

별 지 목 록

[토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 46㎡

[건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시멘벽돌조 시멘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6평7홉

(- 이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